




# 2015년 기준중위소득 결정과정에서의 쟁점

2015. 5. 26.  
강신욱(사회보장연구실)



# 배경

- 2014.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2015. 7. 1 개정법 시행
- 욕구별 급여체계로 전환
- 각 급여의 선정기준선은 '중위소득의  $x\%$ '로 설정
- 이때 적용할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해야
- 공식적 의사결정과정(중생보위)에 제출한 연구진안 중심으로 소개

# 특징

- 법 개정 이후 최초의 기준중위소득 설정
- 수준과 더불어 '방법' (원칙)의 결정이 중요
  - 이후의 결정 방식은 같은 원칙을 따른다는 전제
- 짧은 기간 안에 방법과 수준을 동시에 결정해야
- 당해 연도(이후 부터는 다음 연도)의 소득을 추정(예측)하는 작업

# 쟁점

- 중위소득 추정과 관련된 일반적 쟁점
  - 어떤 Data를 사용할 것인가
  - 누구의 소득을 서열화 할 것인가(어떤 가중치를 적용할 것인가)
  - 어떤 균등화지수를 적용할 것인가
  - 어떤 소득범주를 이용할 것인가
- 예측과 관련된 쟁점
  - 어떤 소득증가율을 적용할 것인가

# 우선 결정된 쟁점

- 가중치 = 가구가중치
- 균등화 지수 = 최저생계비에 적용되었던 지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균등화지수	1	1.7	2.2	2.7	3.2	3.7

- 경상소득(총소득) 이용
  - 임금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 + 공적 이전소득
  - 기초보장 급여는 제외해야 하나 중위소득가구와는 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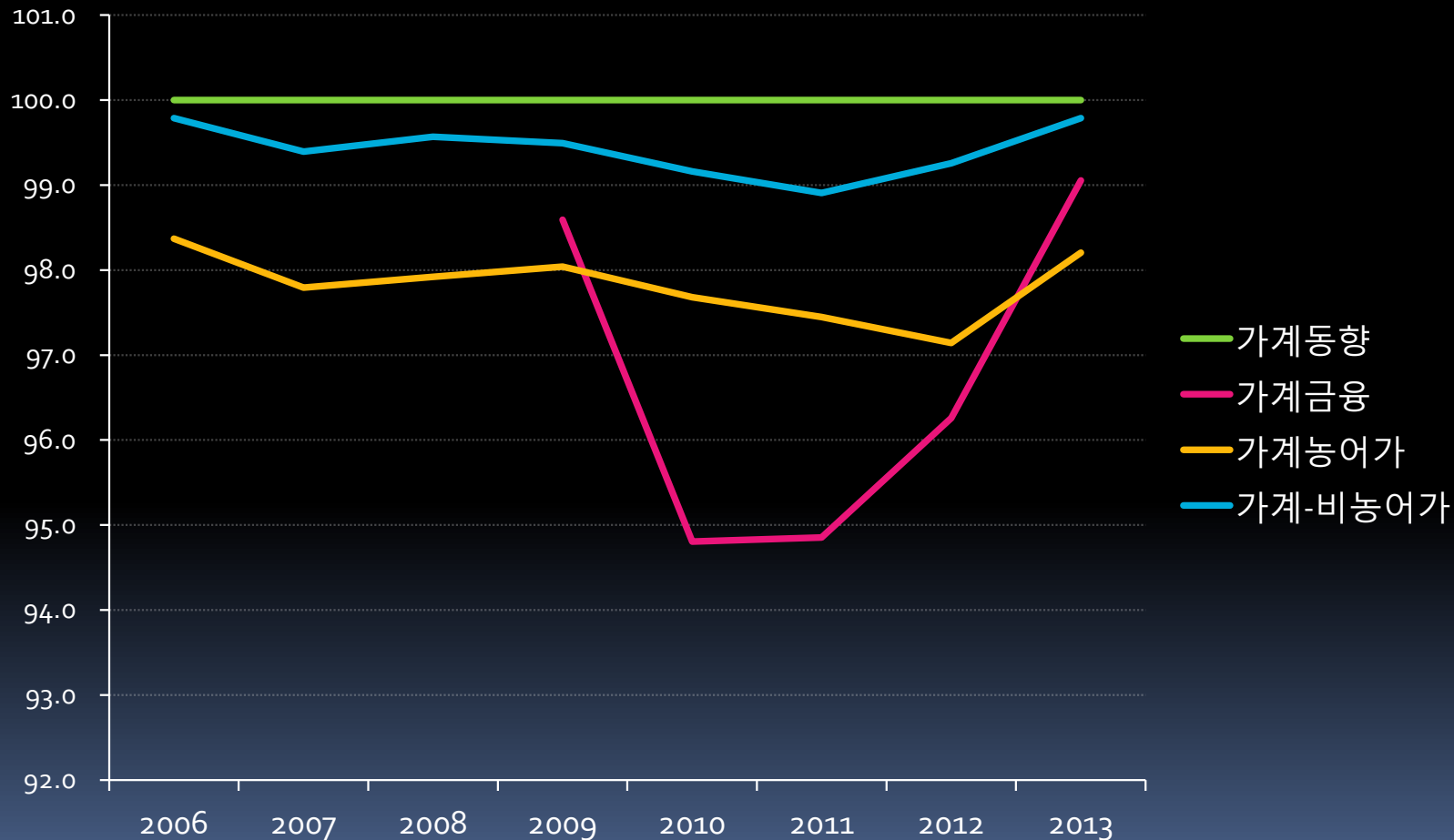
# Data의 선택 - 주요 Data 비교

특징	가계동향	가계농어가	가계금융복지
1인가구 포함여부	O	O	O
농어가 포함여부	X	O	O
최초 연도	2006	2006	2011(2009)
최근 연도('15.3현재)	2013	2013	2013
자료 제공기간	8개년	8개년	3(5)개년
관측치(최근자료, 가구)	10,046	12,481(=10,046+2,435)	17,863
조사방법	가계부기장, 월단위	가계부기장, 월단위	면접(인터넷)조사, 년단위
소득 단위	가구, 원/월	가구, 원/월	가구, 만원/년
기타특징	소득 및 지출 세부항목		자산 및 부채 정보포함

# Data별 중위소득 수준

	가계동향조사	가계농어가조사	가계농어가조사 _비농어가	가계금융복지조사
2006	1,068,389	1,050,966	1,066,112	
2007	1,132,695	1,107,701	1,125,834	
2008	1,167,898	1,143,628	1,162,848	
2009	1,189,610	1,166,278	1,183,594	1,172,842
2010	1,269,658	1,240,221	1,258,997	1,203,700
2011	1,364,336	1,329,521	1,349,437	1,294,117
2012	1,442,853	1,401,630	1,432,146	1,388,892
2013	1,484,642	1,458,008	1,481,481	1,470,592

# Data별 중위소득 - 상대비교





# Data에 대한 몇 가지 사실

- <가계 + 농어가>의 경상소득과 <가계동향>의 경상소득은 다르다
  - <가계 + 농어가>의 경상소득에는 공적 현물이전 제외
  - <가계동향>의 경상소득에는 공적현물이전 포함
  - 하지만 <가계동향>의 공적이전소득에는 공적현물이전 제외
- <가계 + 농어가>의 소득범주간 관계에 주의할 점
  - 특히 농어가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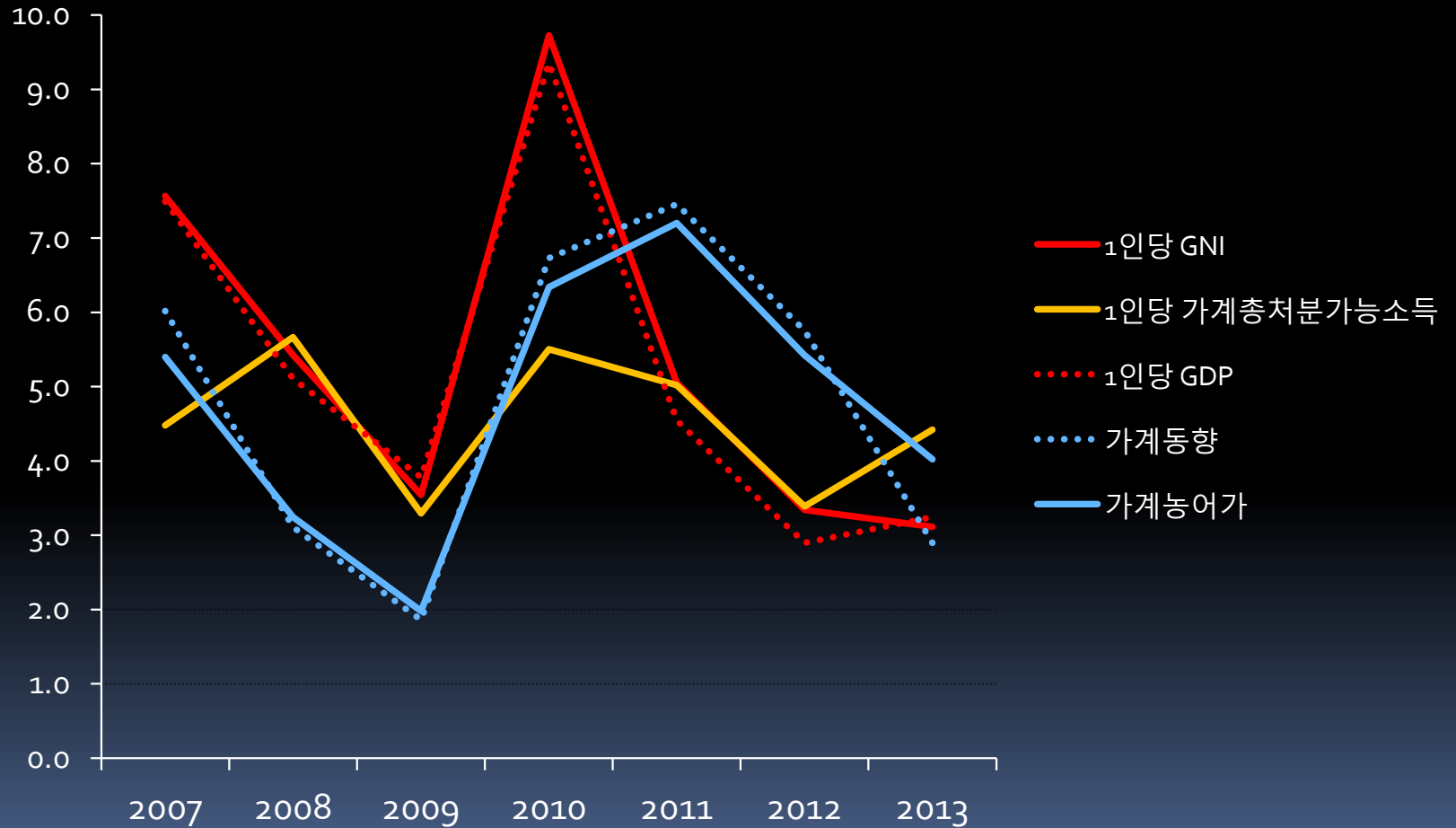
# 결국 Data의 선택은..

- <가계+농어가>
  - 대표성 (농어가 포함)
  - 소득조사방법의 우수(가계부, 월 단위)
  - 비교적 긴 시계열
  - 국가 대표 소득분배지표 산출에 이용
- 비용
  - 지출관련 상세자료, 자산 및 부채 관련 자료 이용 제약

# 실질적 쟁점은 ‘증가율’

- 미시자료상의 중위소득증가율과 함께 다양한 거시지표 증가율 검토
  - 1인당 GNI, 1인당 GDP,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 등 소득관련 변수의 증가율
  -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물가관련 증가율
- 개정 법안(6조2)의 규정
  -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야”
  - 거시지표는 일찌감치 검토대상에서 제외

# 참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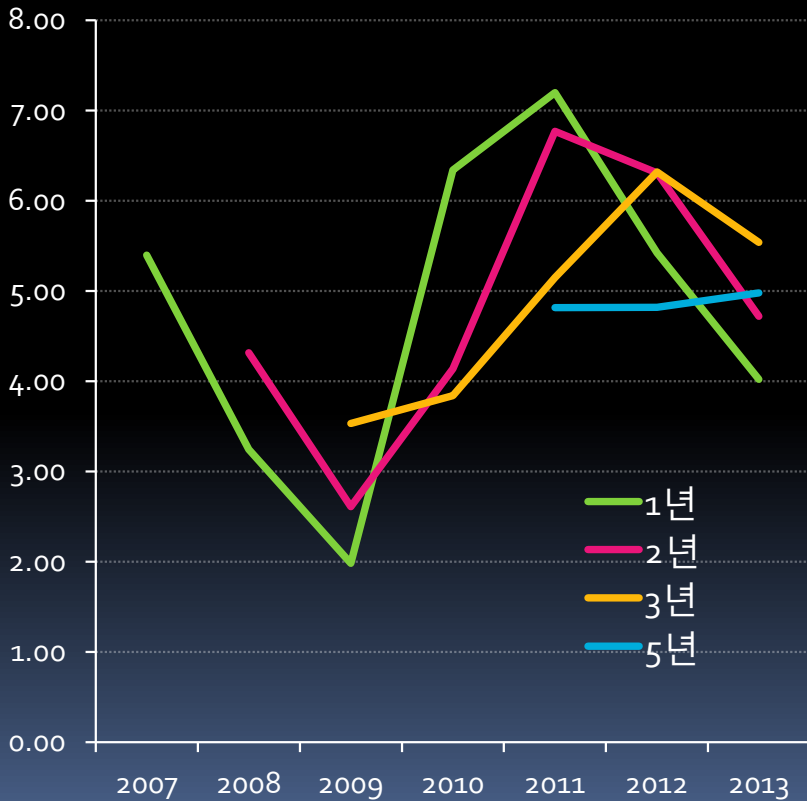
# 그렇다면 쟁점은 ‘몇 년간 평균?’

<가계+농어가자료>의 연도별 중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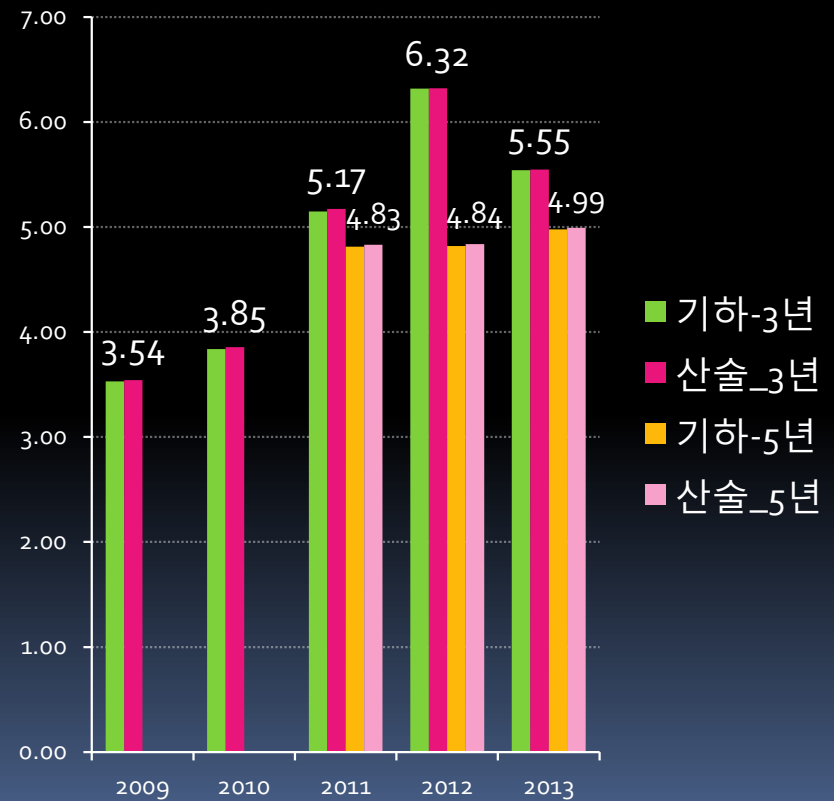
	중위소득(원/월)	(기하)평균 증가율(%)			
		1년간	2년간	3년간	5년간
2006	1,050,966				
2007	1,107,701	5.40			
2008	1,143,628	3.24	4.32		
2009	1,166,278	1.98	2.61	3.53	
2010	1,240,221	6.34	4.14	3.84	
2011	1,329,521	7.20	6.77	5.15	4.81
2012	1,401,630	5.42	6.31	6.32	4.82
2013	1,458,008	4.02	4.72	5.54	4.98

# 증가율 선택의 고려 요인 - 안정성

## 장기평균일수록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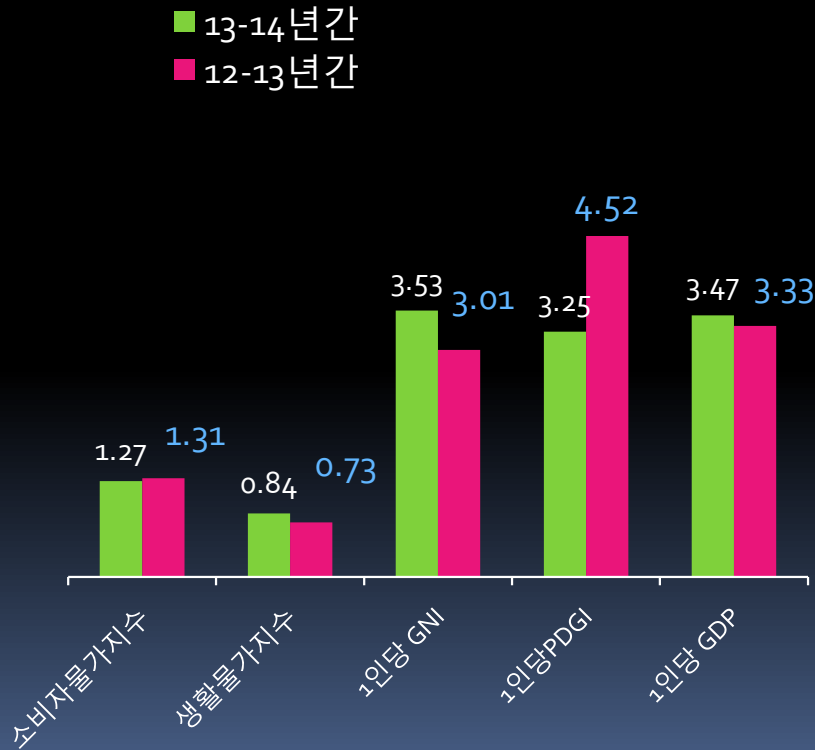


## 기하 vs. 산술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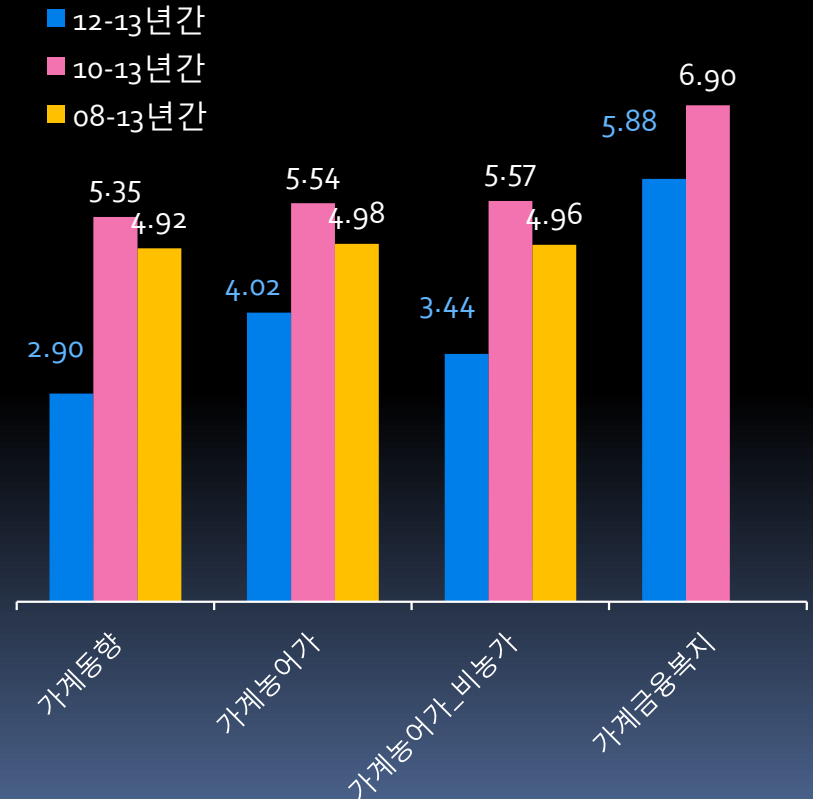


# 증가율 선택 시 고려 요인 - 최근 동향 반영

## 최근의 거시지표 증가율



## 중위소득의 변화율



# 3년간 평균 증가율로. 그러나..

- 안정성, 최근 동향 반영 조건 등을 반영하여 3년간 평균 증가율로
- 하지만 여전히 <가계+농어가>의 최근 3년 증가율은 5.54%
  - 2015년 중위소득 예측값 =  $1,458,008 \times 1.0554^2 = 1,624,054$
  - 이 값의 28% = 454,735
  - 이는 '15 상반기 생계급여 기준(389,285원)보다 65,450 높아진 것
- 이대로 수용되지는 않음



# ‘수준은 수용하되 증가율은 문제’

- '12~'13년간 <가계+농어가>의 증가율은 4.0%, <가계동향>의 증가율은 2.9%
  - 둘의 차이는 농어가의 소득증가율 급증
  - 농어가 가구 중 '표본 추가'의 효과에 대한 논란
- 결국 <가계+농어가>의 3년 평균 증가율을 그대로 쓸 수 없다는 주장 제기
  - '13년 중위소득은 사용하지, 그로부터 도출된 증가율은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

# 결론은 4.00%, 4,222,553원 (4인)

- '14년 <가계+농어가>자료 '급'사용
  - 중위소득 4,060,128원(4인) → 1,503,751(1인)
  - 이 값에 증가율 1번 적용 → '15년 중위소득 예측
  - 대중에게 원자료 공개되지 않은 상태
  - 이에 따르면 '11 ~ '14 3년간 평균증가율은 4.19%
- 4.00%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5.42('11 ~'12 증가율) + 3.44('12 ~'13 농어가제외 증가율) + 3.14('13 ~'14 증가율)의 '산술평균'

# 아쉬움

- 수준과 더불어 원칙의 확인이 중요한 경우
  - '15년에 한하여 예외를 둔 결정
  - 최근의 원시자료를 연구진이 확인 못함
  - 연구진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 '15하반기부터는  $t(\text{data}) + 2$ 년 후를 추정:
  - 증가율 선택에 더욱 민감
- 모든 급여과 관련 기준선을 up-date 했는지..

# Quiz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A. 기준 중위소득(발표)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균등화지수	1	1.7	2.2	2.7	3.2	3.7
B. 4인 기준 균등화적용	1,563,901	2,658,632	3,440,582	4,222,533	5,004,484	5,786,434
차액 (=A-B)	-1,564	1,564	782	0	-782	-1,564